

● 제28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426

### I. 조례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 2. 1.
- 다. 회부일 : 2018. 2. 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구체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종전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나. 보육교직원의 주요내용

- 책무 조항에 보육교직원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를 명시한 것으로, (안 제21조의2제2항)

- 보육교직원의 금지 행위로 (1)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2)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 (3)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하는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고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첨부

##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조례안의 개요

-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에 의한 영유아 사망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교통사고, 추락 및 질식 등의 사고사에 의한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률은 OECD 평균(2015년 기준)보다 높은 상황임.
-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폭염 속 통학 버스 간헐 사고 등 안전 사고 및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어린이집 시설이나 차량 내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

### 2 주요사항 검토

####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따른 금지 행위 신설

- 개정안(안 제21조의2제2항)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3개의 호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18.07.17.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아이 방치 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시장의 요청사항('18.07.24.)으로 추진된 것임.
-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제53조제4항<sup>1)</sup>에 따른 통학 버스 간힘 사고 방지를 위한 영유아 하차 확인 행위 미실시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위해 행위, 어린이집의 사각 지대인 폐쇄 공간에서의 아동 방임, 적정수준 이하의 급식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상위법이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금지 조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지 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에서 벌칙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제1호의 「도로교통법」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벌칙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실효성 차원에서 금지 행위라기 보다는 계도나 주의 규정을 신설한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현행 조례에서 이미 어린이집 차량 안전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개정안에서 조문 순서상 뒷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정의를 조문에 명시하고 있어 두 조항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현행 제2조의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정의규정을

---

1) 「도로교통법」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례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조문을 단서조항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영유아의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  
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용으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의 조항과의 조화 및 시민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